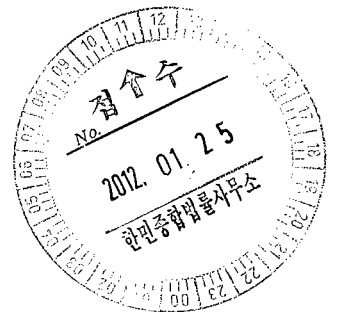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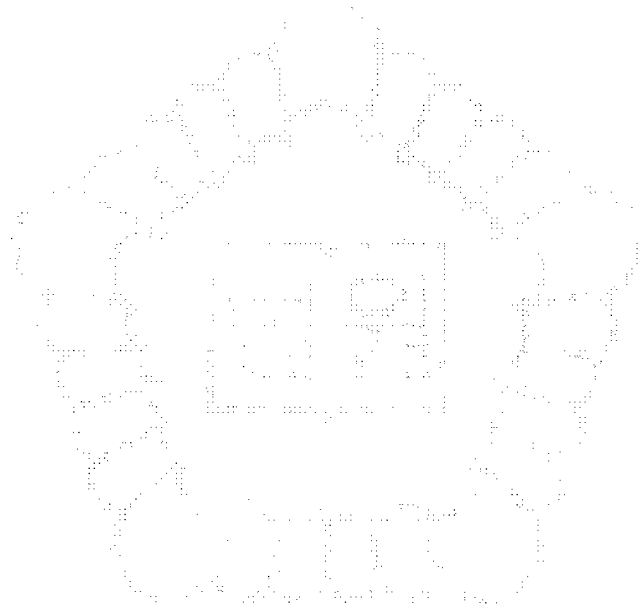


2011구 합35927

판 결 서



서울행정법원

서울 행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11구합35927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원 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대표자 강철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
담당변호사 황민호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송수행자 신진철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1.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의 개요 [사업장명, 소재지(시/군/구), 규모(종업원 수), 구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기업(공사포함)), 이행(설치/위탁/수당)/미이행이 포함된 최근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사연구, 시민조직, 시민교육, 홍보선전, 시민고발센터 운영 및 법률구조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2011. 6. 30. 피고에 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등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의무대상 사업장의 개요[사업장명, 소재지(시/군/구), 규모(종업원수), 구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기업(공사포함)), 이행(설치/위탁/수당)/미이행이 포함된 최근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및 '2009년과 2010년 직장보육시설 연도별 설치현황(이행실적)'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2009년과 2010년 직장보육시설 연도별 설치현황(이행실적)'을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에 관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호에서 규정하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의하면,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등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으로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업 등의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고 조직의 결속력 약화 또는 매출의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해당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

는 정보에 해당하고 특히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응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그러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구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명성이나 이미지가 다소 저하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뿐이고, 해당 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구 영유아보육법에서 제14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단서 나목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_____

 판사 안승훈 _____

 판사 김종범 _____

관계법령

■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정의)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끝.

정본입니다.

2012. 1. 19.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보 김 지 현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